

2006. 3. 15(수)  
제121회임시회제3차본회의

#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산 업 건 설 위 원 회

#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6. 3. 7. 제천시장
- 회 부 일 : 2006. 3. 7.
- 상 정 일 : 2006. 3. 15(제121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회의)

##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무형문화제 제8호로 지정된 오티별신제의 보존과 전수를 위해 건립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의 기능(제4조)
- 전수교육관 이용대상(제5조)
-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되 효율적인 전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수탁자의 의무(제7조)
-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는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수 있음.(제8조)
- 사용료 납부규정(제9조)
  - ※ 감면 사항은 별도로 정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동수)

#### 【 法的檢討 】

-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중요 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도록 하였으며,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오티별신제의 보전 전승 및 후계자 양성과 학술조사 연구·교육 등을 위해 교육전수관을 설치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불대 오티별신제 교육전수관을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겠음.
-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5년 12월 28일 입법 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음.

#### 【 行政的檢討 】

- 조례안 제5조(이용대상)에서 전수관의 이용 대상은 오티별신제 전수희망자, 보전 전승을 위한 교육, 공연 및 관련분야 연구 발표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제9조(사용료)제2항에서 오티별신제의 전승 보전을 위한 교육·공개공연 등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행사에 한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사실상 교육전수관을 오티별신제와 관련된 교육, 연구 활동 등의 행사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데,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은 오티별신제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지만, 조례안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 등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수관을 사용할 시 개관 및 휴관에

대한 사항이나 사용허가와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은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 4. 질의 답변 요지

### 가. 질의요지

- 오티별신제를 보존하기 위한 인원확보에 대한 대책은?(박종유 의원)
- 전수관을 사용할시 개관 및 휴관에 대한 사항이나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도 명시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최창규의원, 김성진 의원)
- 조례안 제10조제1항 시장은 “전수관을 위탁운영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수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바, 내용이 너무 불분명한 것은 아닌지?  
(김성진 의원)

### 나. 답변요지

#### <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

- 수산초등학교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오티별신제 전승학교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도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오티주민뿐만 아니라 면내 주민들이 다같이 참여를 해서 본문화제를 전승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함.
- 별표1에 보면 사용시간이주간과 야간을 명시해 놓았으며, 오티별신전수관이 상시에 개관해서 정기적으로 상시 개관해서 전수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의 여건이 아니므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개관이나 휴관은 조항을 별도로 넣지 않았음.  
시행을 하면서 문제되는 사항은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 여러 가지 사항을 정산을 하면서 불합리하게 됐나 안됐나를 확인하고 검사를 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음.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 5. 소 수 의 견

“ 없 음 ”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 7.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 부. 끝.